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24. 7. 4 조례 제31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체험센터”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체험센터는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 25에 둔다.

제4조(이용대상) 영유아체험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제5조(개관·휴관) ① 영유아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 등 이

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에도 영유아체험센터를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영유아체험센터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체험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영유아체험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영유아체험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영유아체험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3. 영유아체험센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행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참여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은 영유아체험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해야 하며, 체험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프로그램의 신청) 영유아체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및 강사료) ① 시장은 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유아체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거나 관련 징후를 보이는 사람
3. 술, 약물 등에 취한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영유아체험센터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영유아체험센터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영유아체험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체험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영유아체험센터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영유아체험센터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체험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유실
 2. 가족 휴게실
 3.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안내와 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제7조, 제8조 관련)

1. 이용료

구분		입장요금	비고
개인	7세 이하(취학 전 아동)	2,000원	관련 증명서 지참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4,000원	
광명시민	7세 이하(취학 전 아동)	1,000원	관련 증명서 지참
	8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2,000원	
단체	-	2,000원	20명 이상
1. 국민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7.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7세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9.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 10.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 할인 및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할인 및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증명서(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본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할인 및 감면 불가			

2. 체험료

구 분	대 상	금 액	비 고
체험료	영유아 단체 및 가족 등	30,000원 이하	○1회 기준 ○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가능

3.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개인 및 단체	○천재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체험관의 사정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	100%

4. 체험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센터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 개시 전	○전액 환불
	○수업 개시 후	○교육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반환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전액 환불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취소	○교육비의 1/2 해당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취소	○교육비 반환 불가